

# **Contents**

**1** 조세행정법 및 그 시행령 126/2020/ND-CP의 여러 조항을 안내하는 시행규칙 80/2021/TT-BTC

- 2 가족사업자의 VAT, PIT 및 세금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규칙 40/2021/TT-BTC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행규칙 100/2021/TT-BTC
- 3 시행령 102/2021/ND-CP는 행정 처벌을 규정하는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 4 결정문 33/2021/QD-TTg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과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정책의 시행에 관한 결정문 23/2021/QD-TTg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 5 세무 당국에 대한 불만 해결 위한 직접 협의에 관한 결정문 1490/QD-TCT
- 6 세금계산서 및 기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2021년 9월 17일자 시행규칙 78/2021/TT-BTC의 새로운 규정 도입에 관한 일반 국세청 공식 서한 4144/TCT-CS
- 7 Covid-19와 관련된 일부 비용 및 혜택 그리고PIT 면제
- 8 수입품 폐기에 관한 공식 서신 4125/TCHQ-TXNK
- 9 파기 허용된 수출 생산품 취급에 관한 공식 서신 No.4783/TCHQ-TXNK
- 10 수출 생산을 위해 그 자리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공식 서신 No. 7074/TXNK-CST

### 1. 조세행정법 및 그 시행령 126/2020/ND-CP의 여러 조항을 안내하는 시행규칙 80/2021/TT-BTC

2021년 9월 29일, 재무부는 정부의 2020년 10월 19일자 조세행정법 및 그 시행령 126/2020/ND-CP의 여러 조항 시행을 안내하는 시행규칙 80/2021/TT-BTC를 발표했습니다. 시행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본 시행규칙은 기존 시행규칙 81을 대체합니다.

- 조세행정법, 개정조세행정법 및 시행령 83/2013/ND-CP의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규칙 156/2013/TT-BTC:
-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99/2016/TT-BTC:
- 부가가치세 환급 관리에 관한 시행령 99/2016/TT-BTC, 시행규칙 31/2017/TT-BTC 수정 및 보완:
- 지방성 단위의 세무 자문 위원회 활동에 관한 시행규칙 208/2015/TT-BTC;
- 판매자가 일반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평가에 관한 시행규칙 71/2010/TT-BTC;
- 시행규칙 06/2017/TT-BTC 수정 및 보완 조항 34a 시행규칙 156/2013/TT-BTC:
- 시행규칙 79/2017/TT-BTC 수정 및 보완 항목 b1항 b항 4조 48 시행규칙 156/2013/TT-BTC.

시행규칙 80/2021/TT-BTC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 기간부터 적용되며, 이는 모든 현행 세금 신고 양식을 대체하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2021년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 확정 신고서류도 이 시행규칙에 따라 새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80/2021/TT-BTC는 시행령 126/2020/ND-CP의 보다 상세한 지침 및 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세무 행정 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현행 세무 행정 규정과 비교하여 많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 가족사업자의 VAT, PIT 및 세금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시행규칙 40/2021/TT-BTC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행규칙 100/2021/TT-BTC



2021년 11월 15일 재무부는 Circular 40/2021/TT-BTC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Circular 100/2021/TT-BTC를 발표했습니다.

- 전자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법인은 개인셀러의 승인을 받고 그들을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40/2021/TT-BTC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소유자가 플랫폼에서 개인셀러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 12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수익이 1억 VND를 초과하지 않은 임대인은 VAT 및 PIT가 면제됩니다. 시행규칙 40/2021/TT-BTC는 VAT 및 PIT 면제의 근거로 수익이 연간 1억 VND를 초과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연속12개월을 적용합니다.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해당 연도에 수익이 VND 1억 미만인 경우에도 VAT 및 PIT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100/2021/TT-BTC 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3. 시행령 102/2021/ND-CP는 행정 처벌을 규정하는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2021년 11월 16일, 정부는 세금계산서 관련 위반에 대한 행정 처벌을 규정하는 시행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102/2021/ND-CP를 발표했습니다. 관세 범죄: 보험업: 복권 사업: 공공 재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행령 102/2021/ND-CP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다음 위반 중 하나에 대해 2000만~5000만 VND 범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고객이 주문한 인보이스를 다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인보이스 관련 과태료 부과 시한은 2022년 1월 1일부터 2년 (현행 1년)으로 함
- 청구서의 멸실, 소각 또는 훼손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명시한 제26조 3항 4항을 보완하여 개정함. 구체적으로, 다음 위반 중 하나에 대해 400-800만 VND 범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판매자가 이미 세금을 신고 또는 납부했거나,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 중 발행된 청구서(고객용 복제본)의 손실, 소실 또는 손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이미 발급된 세금 계산서 또는이미 제출된 세금 계산서 또는 사용/보관 중인 인보이스를 분실, 소각 및 훼손한 행위에 대해 5백만에서 1천만 VND 범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제26조 1, 2,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4. 결정문 33/2021/QD-TTg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과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정책의 시행에 관한 결정문 23/2021/QD-TTg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2021년 11월 6일,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과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한 특정 정책의 시행에 관한 결정문 23/2021/QD-TTg의 일부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결정문 33/2021/QD-TTg를 발표했습니다.

- 사회 보험료를 완납했거나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2021년 1월 말까지 퇴직 및 생존 기금에 대한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고용주 중2021년 1월에 비해 사회 보험에 가입한 직원 수가 10% 이상 감소한 경우 결정문 23/2021/QD-TTg에 따른 지원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고용인에 대한 실업 보험료를 완납했으며 훈련에 참석할 고용인에 대해 실업 보험료를 완납했음을 확인하는 사회 보장 기관의 문서를 고용주가 지원 요청 시점까지 발행하여야 합니다.
- 지원을 받기 위해서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계약 정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 계약 기간 내 고용 계약 또는 무급 휴가 중단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말까지 연속 15일 이상이며 고용 계약 중단 또는 무급 휴가 시작일입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고용 계약 또는 무급 휴가가 중단되기 전 달까지 의무 사회 보험에 기여했습니다.

### 5. 세무 당국에 대한 불만 해결 위한 직접 협의에 관한 결정문 1490/QD-TCT

세무 당국의 불만 해결에 대한 직접 협의에 관한 규정 공표에 관한 결정문 1490/QD-TCT (2021년 10월 22일자). 이와 관련하여 이번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접 상담 조직은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요소를 기반으로 고려됩니다: 불만 사항 내용이 복잡하거나, 과하게 부과된 세금, 벌금 및 연체이자; 법률 문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경우; 세법 이외의 법률 정책 관련 등등



협의 결과는 세무당국의 장에게 보고하여 민원해결방안을 결정하기 전 검토 및 참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전체 멤버의 50~7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협의를 담당하는 부서는 이 방법에 따라 고충의 심의 및 해결을 위해 세무서장에게 보고한다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임을 설명하여야 한다.

### 6. 세금계산서 및 기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2021년 9월 17일자 시행규칙 78/2021/TT-BTC의 새로운 규정 도입에 관한 일반 국세청 공식 서한 4144/TCT-CS



2021년 10월 28일, 세무국은 지난 뉴스레터에서 언급한 대로 송장 및 기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2021년 9월 17일자 시행규칙 78/2021/TT-BTC의 새로운 규정 도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공식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 기업, 사업체 또는 기타 조직인 우수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는 법령 132/2020/ND-CP 5조 2항에 따라 판매자의 특수 당사자인 제3자에게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승인은 두 당사자 간에 서면(승인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승인 당사자는 세무 당국에 승인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고 최초 수정(조정 또는 교체)한 후 다른 오류가 발견된 경우 이러한 이 오류는 첫 번째 오류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판매자는 오류가 있는 전자 세금계산서가 수정되는 VAT 신고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여러 오류의 전자 세금 계산서의 조정을 세무 당국에 통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 공포일 이전에 외부에서 인쇄된 세금계산서 또는 내부 인쇄된 세금계산서, 그리고 미인증 전자 세금계산서 중 발행 사실을 이미 알렸거나, 인증된 전자 인보이스 사용을 이미 신청한 경우, 또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구매한 기업 및 사업자의 경우 78/2021/TT-BTC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이 인보이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 78/2021/TT-BTC 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설립된 기업 및 사업체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IT 인프라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무 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7. Covid-19와 관련된 일부 비용 및 혜택 그리고PIT 면제

#### ➤ 국세청 공식 서신 4110/TCT-DNNCN

2021년 10월 17일, 국세청은 Covid-19 전염병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세금 정책에 대한 공식 서신 No. 4110/TCT-DNNCN을 발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발생했고 충분한 증빙 서류가 있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의 실제 비용은 다음을 포함하여 PIT에서 면제됩니다.:

- 해외 출장 시 식사, 숙박, 베트남 및 해외 코로나19 검사를 포함한 검역 비용
- 베트남 입국지에서 검역소까지의 교통비
- 격리기간 중 생활비
- Covid-19 테스트 비용 또는 직원용 테스트 키트 구입 비용, 작업 중 감염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 구입
- 회사의 공장 등에서 숙식을 하며 격리되어 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지출된 비용

#### ➤ 국세청 공식 서신 4102/TCT-DNNCN

2021년 10월 25일, 국세청은 직원의 과세 소득 결정에 관한 공식 서한 4102/TCT-DNNCN을 발행했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결정문 No. 23/2021/QD-TTg의 규정에 따라 Covid-19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직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험 기금에 납부한 경우 이 금액은 PIT과세대상이아닙니다.



### 8. 수입품 폐기에 관한 공식 서신 4125/TCHQ-TXNK

2021년 8월 20일, 관세청은 원자재, 수출 제품, 스크랩 제품, 기계 및 장비를 파괴하여 고정 자산을 생성할 때의 세관 절차에 대한 공식 서신 No. 4125/TCHQ-TXNK를 발행했습니다.

- 유형 코드 E31의 수입, 제조 및 수출 상품을 파기하기 전에 세관에 통지를 보내는 방법: 폐기해야 하는 수출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4월 25일부터 폐기해야 하는 과잉 원자재 및 공급품, 스크랩, 폐기 제품 및 손상된 완제품은 면제됩니다. 수입세에서. 기업은 파기 전에 세관에 파기 방법과 장소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파괴는 환경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고정 자산을 생성하기 위해 수입품을 파기하는 경우: 수입세 및 수출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면세 고정 자산을 생성하기 위해 수입 상품을 파기하는 것은 규정을 준수하고 세관 직원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파기하기 전에 납세자는 규정에 따라 파기된 물품, 파기 사유, 파기 시간 및 장소, 파기 관할 당국의 서면 허가서를 세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 및 모든 절차를 완료한 물품은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 9. 파기 허용된 수출 생산품 취급에 관한 공식 서신 No.4783/TCHQ-TXNK

2021년 10월 8일, 관세청은 수출 생산을 위해 수입된 원자재 및 공급품, 수출용 제조 제품, 생산 과정에서 형성되는 스크랩 및 폐기 제품에 대한 세금 처리를 안내하는 공식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아직 생산에 투입되지 않은 수입 원자재 및 공급품에 관련된 폐기할 스크랩 및 폐기물:

- 수출품 형태로 수입되는 원자재 및 공급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및 폐기품이 관세법에 따라 폐기처분되어 실제 폐기되는 경우에는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 회사가 내륙에서 판매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제품을 파기 후 입수한 경우 특별 소비세(있는 경우), 환경 보호세(있는 경우), 세무 당국에 가치세 인상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출하되기 전에 충분한 품질의 완제품이 테스트를 위해 보내진 다음 파기되거나 수출 시장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 제조된 제품이 관세법에 따라 처분이 허용되고 실제로 멸실된 경우에는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 회사는 파기 후 다른 제품을 사용하여 내륙에 판매할 수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있는 경우), 환경보호세(있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자재, 공급품, 완제품 등을 예비파기한 경우

• 원자재, 공급품, 완제품 및 국내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한 반제품의 예비 파괴한 경우 스크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수입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기업은 폐기해야 하는 완제품 및 반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원자재 및 공급품에 대해 새로운 세관 신고서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10. 수출 생산을 위해 그 자리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공식 서신 No. 7074/TXNK-CST

2021년 9월 15일, 관세청은 국내 기업이 수출 가공 기업, 공업 지대로부터 수출 상품 생산을 위해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세금 정책을 안내하는 공식 서한을 발행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기업이 수출가공기업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수입하고 판매계약을 통해 수출용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 Clause 2, Article 12 of Decree 134. 2016/ND-CP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입세가 면제됩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코드 E31로 기록하며(수출용 생산자재 수입), 이는 수입세가 면제되고 VA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국기관이나 개인이 외국기관 또는 개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수출가공기업을 지정하여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매매계약을 통해 국내기업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내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134/2016/ND-CP 시행령 12조 2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수출 가공 기업의 경우 수입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코드 E31로 기록하며(수출용 생산 자재 수입), 이는 수입세가 면제되고 VAT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내 기업이 베트남에 없는 외국 무역업자와 물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외국 무역업자가 베트남에 있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현지 수입 제품은 사업 수입(A11) 또는 수입 사업 및 생산(A12) 유형에 따라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수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세금의 경우 기업은 신고 코드 A11 및 A12에 해당하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수입 제품(in-country imported product)이 생산에 투입되어 외국 또는 비관세 지역으로 수출되는 경우, 수출업자는 수출제품을 구성하는 국내 수입 원자재 및 공급량에 해당하는 수입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Contact

고객님께서 회계, 세무, 이전가격, 투자활동, 관세, 노동법 및 기타 경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Grant Thornton 팀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뉴스레터를 다운로드 하고 싶으신 경우, 우측 링크를 통하여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Tax Hub

#### **Head Office in Hanoi**

18<sup>th</sup>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grantthornton.com.vn

#### **Hoang Khoi**

National Head of Tax Services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 권 혁 준 (Kwon Huyck Jun)

Director – Korean Desk D +84 24 3850 1679 E hyuckjun.kwon@vn.gt.com

#### **Bui Kim Ngan**

Tax Director
D +84 24 3850 1716
E ngan.bui@vn.gt.com

#### 김민제 (Kim Minje)

Senior Manager – Korean Desk **D** +84 379 591 011 **E** minje.kim@vn.gt.com

####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 **Vishwa Sharan**

Director – Transfer Pricing
D +84 327 345 053
E Vishwa.Sharan@vn.gt.com

#### **Hoang Viet Dung**

Director - Tax and Transfer Pricing Services **D** +84 24 3850 1687 **E** dung.hoang@vn.gt.com

#### **Ho Chi Minh City Office**

14<sup>th</sup>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 Valerie - Teo Liang Tuan

Tax Partne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 Lac Boi Tho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0 **E** tho.lac@vn.gt.com

####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

© 2021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

